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정이유

「건축법」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축업무 수행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운영에 따른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특별회계의 구체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특별회계의 설치,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3조)
나.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다.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라. 특별회계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마. 특별회계 예비비 및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~제8조)
바. 특별회계 준용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사.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)
아.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「건축법」제87조의2, 제87조의3
「성주군 건축조례」제37조, 제38조, 「지방재정법」제9조
나. 예산조치 : 특별회계 조성 예정
다. 기 타 : 1) 입법예고(2022. 1. 17. ~ 2. 6.) 결과, 의견없음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[미래지역활력과-320(2022.1.17.)호]
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[가족지원과-2745(2022.1.17.)호]
4)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: 원안가결
5) 비용추계서 : 붙임, 별첨 2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건축법」제87조의3 및「성주군 건축조례」제38조에 따른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특별회계의 설치) 성주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지진·화재·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3조(관리·운용) ①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·운용한다.

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.

제4조(세입)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·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70
2.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·징수되는 과태료의 전액

제5조(세출)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, 인건비, 조사·연구비
2.「성주군 건축 조례」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
3. 특별회계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4.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·화재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

제6조(일시차입)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

제7조(예비비)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.

제8조(잉여금의 처리)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(移入)한다.

제9조(준용)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.

제10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「지방재정법」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첨 1]

관련법령 발췌

◈ **건축법(안 제1조)**

제87조의2(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) **① 시·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,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** <개정 2019. 4. 30., 2020. 4. 7., 2020. 12. 22.>

1. 제21조, 제22조,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·확인·검토·심사 및 점검

1의2. 제11조,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

2.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·감독

3. 삭제 <2019. 4. 30.>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「건축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「기술사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87조의3(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) **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·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**

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2.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

3. 제80조에 따라 부과·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

4. 제113조에 따라 부과·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
5. 그 밖의 수입금

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
2.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
3.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·연구비
4. 특별회계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
5.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

◈ 성주군 건축조례(안 제1조)

제37조(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) **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와 공사장 및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(이하 "건축안전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.**

② 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센터는 「건축물관리법」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영 제119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·관리
2.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·분석,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
3. 지진·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
4. 군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·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
5. 주택·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
6.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8조 (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·운영) **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·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**

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회계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·점검 비용

2.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
3.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·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·검사·업무대행 비용

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금액의 비율 등 군수가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◈ 지방재정법(안 제8조)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별첨 2]

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(운영비, 여비, 조사점검비, 사업비)
2. 비용추계의 전제 : 전액 군비
 - 세입 : 이행강제금, 과태료는 3년('19 ~ '21) 수납액 평균치로 적용
 - 세출 : 건축물 안전점검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여비,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따른 장비구입 및 사업비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세입	○ 이행강제금×70% (3년평균 3.5억원)	240,000	240,000				480,000
	○ 과태료의 전액 (3년평균 5백만원)	5,000	5,000				10,000
	소계(a)	**245,000**	**245,000**				**490,000**
세출	○ 운영비	3,000	3,000				6,000
	○ 여비	2,000	2,000				4,000
	○ 조사점검비	40,000	40,000				80,000
	○ 사업비	200,000	200,000				400,000
	소계(b)	**245,000**	**245,000**				**490,000**
□ 총 비용(a-b)		-	-				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						
도비	일반회계						
	○○특별회계						
	○○기금						
시·군비(세외수입)		245,000	245,000				
민간							
기타							
합계							

5. 부대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도시계획과 건축안전담당 노철수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세입 : 약245,000천원

□ 비용추계 기준 : 건축허가수수료 및 과태료의 전액, 이행강제금의 70%

가. 이행강제금의 100 분의 70 : 약 240,000천원

연도별	이행강제금 수납실적	세입
2019	522,571,510	365,800,057
2020	356,974,290	249,882,003
2021	159,084,760	111,359,332
3년간 평균	346,210,186	242,347,130 ≒ 240,000,000

나. 과태료의 전액 : 약 5,000천원

연도별	과태료 수납실적	세입
2019	-	-
2020	2,100,000	2,100,000
2021	14,800,000	14,800,000
3년간 평균	5,633,333	5,633,333 ≒ 5,000,000

2. 세출 : 약245,000천원

□ 비용추계 기준 : 운영비, 여비, 조사점검비, 사업비

가. 운영비 : 3,000천원

○ 건축물 안전점검 업무추진 일반수용비

나. 여 비 : 2,000천원

○ 건축안전 업무 추진 여비

다. 조사점검비 : 40,000천원

○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: 30,000천원

○ 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장비구입 : 10,000천원

라. 사업비 : 200,000천원

○ 노후건축물·지진·화재·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: 200,000천원